《수교집록》편찬에 대한 리해

정 충 섭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 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 력사에서 아직도 과학적으로 해명하여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김정일선집》제2권 중보판 35폐지)

일반적으로 수교란 우리 나라 봉건사회 에서 사간원과 사헌부의 동의수표를 받은 국왕의 지시를 말한다.

다른 나라의 법전에는 관계없이 조선봉 건왕조의 조건과 환경으로부터 만들어진 수교는 일정한 기간 법적효력을 가지고 법 집행에 적용되였으며 그 일부는 법전편찬 의 기초자료로 리용되였다.

조선봉건왕조에서는 해당 시기의 수교를 수집정리하여 《경제륙전》이나 《경국 대전》, 《대전통편》 그리고 《대전회통》을 편찬할 때 필요한 법조항으로 올리였다.

수교를 수집정리하는 과정을 통하여 조 선봉건왕조 중엽에 《각사수교》와 《수교집 록》, 《신보수교집록》과 같은 서적들이 나 왔다.

《수교집록》은 편찬형식과 내용의 측면에서 볼 때 현존하는 조선봉건왕조의 수교서적가운에서 대표적성격을 띠는 서적이다.

《수교집록》이전에 나온《각사수교》는 6 조와 한성부, 장예원의 수교들을 삭제하거 나 수정함이 없이 원문그대로 서술한것으로 하여 법조문다운 면모를 갖추지 못하였다. 《수교집록》이후에 나온 《신보수교집록》은 《수교집록》의 편찬경험에 기초하여《수교집록》에 올리지 못한 잡다한 수교들을 모두 수집하여 만든 서적이다. 그런것으로 하여 《신보수교집록》의 수교들은 그이후에 편찬된 《대전회통》에 법조문으로 대대적으로 리용되지 못하였다.

《수교집록》편찬과정을 연구하는것은 조

선봉건왕조의 법전의 성격과 법관계서적 편찬사를 연구하는데서 일정한 의의를 가진다.

조선봉건왕조에서는 왕조초기는 물론 중엽에 와서도 법관계서적편찬에 적지 않 은 품을 들이였다.

16~17세기에 와서 당쟁이 격화되면서 통치계급의 내부분쟁이 심화되였고 신역제와 공물제도에서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반봉건투쟁이 힘차게벌어졌다. 따라서 조선봉건왕조를 유지공고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경제적변화에 대처할수 있는 법조항이 절실히 필요되였다.

그러나 《대전후속록》을 편찬한 1543년 부터 17세기 중엽에 걸치는 150여년간 법 관계서적편찬사업은 1630년대의 《각사수 교》편찬을 제외하고 거의 진행되지 못하 였다.*

*《〈후속록〉은 중종 계묘년(1543년을 말함─역주)에 이루어졌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또 150여년이 흘렀다. ··· ··· 〈후속록〉의 뒤를 계승하고 (법령을) 점차적으로 넓혀나가려고 하였었는데 나라에 제기되는일이 많아 편찬할 겨를이 없었다. 그러다보니 세월이 오래되였고 관리들은 지시를받들어 시행하는데서 암매하며 이에 대하여 론하는자들은 원망해하고있다.》(《수교접록》서)

1630년대에 와서 그 이전의 6조와 한성 부, 장예원의 수교들을 수집한 다음 필사 하여 《각사수교》라는 이름을 달아놓았다.

그러나 《각사수교》가 나왔다고는 하지만 이 문헌에서는 법조항을 설치하게 된 전과정을 지나치게 라렬하는것과 함께 리 두토를 많이 사용한것으로 하여 법조항으로서의 체모를 갖추지 못하였기때문에 법 집행에 원만하게 리용될수 없었다.

이런데로부터 조선봉건왕조앞에는 새로 운 현실에 적용할수 있는 법관계서적의 편 찬이 더는 미룰수 없는 시급한 문제로 제 기되였던것이다.

조선봉건왕조는 17세기에 이르러 새로 운 사회경제적변화에 대응할 법제의 정비 에 본격적으로 달라붙었다.

《경국대전》이나 《대전속록》에 수록된 조항과 같이 보다 구체적이고 간단명료하 게 된 수교조항이 필요되였다.

1664년에 력대 왕들의 수교를 대대적으로 정리하여 서적으로 편찬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였다.

1664년 11월에 우의정 허적은 국왕에게 《력대의 수교들을 오래동안 정리하지 못하 고있습니다. 때문에 글을 올려 송사를 제 기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찾아보게 되는데 마땅히 정리하는 일을 하여야 할것입니 다.》라고 제기하였다.

그러자 국왕은 《력대의 수교들은 모두 모아 시행할수 있는것과 시행할수 없는것 을 나누어 표를 붙여서 보고할것이다.》라 는 지시를 내리였다.

국왕의 이 지시에 따라 수교정리를 위한 관청을 별도로 설치하였다*.

*《현종실록》 권17 기유년(1669) 11월 무술 조

수교를 정리할데 대한 국왕의 지시도 있었고 수교정리를 위한 관청도 내왔지 만 1682년까지 이 사업에 착수하지 못 하였다.

《수교집록》의 서문에 의하면 《대전후속 록》의 뒤를 이어 수교들을 정리하려고 하 였지만 《나라에 제기되는 일》이 많았기때 문에 할수 없었다고 한다.

당시 나라에 제기되는 많은 일때문에 수교를 정리하지 못한것은 여러가지 원인 이 있었지만 특히는 봉건지배계급의 각종 수탈행위로 하여 인민들의 투쟁이 더욱 격 화되였기때문이였고 이 시기 지배계급내부 에서 당파싸움이 치렬하게 벌어졌기때문이 였다고 볼수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하여 수교정리를 위한 관청을 폐기하지 않으면 안되였고 수교정 리사업은 유명무실한것으로 되고말았다.*

*《전번에 〈대전〉을 완비하라는 지시가 내리고 관청까지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 그런데 그 이후에는 관청까지 폐기하였으니 이 일은 소리만 내고실지 하지는 못하였습니다.》[《현종실록》 권17 기유년(1669) 11월 무술조]

결국 수교에 대한 정리사업은 현종 (1659-1674)시기에 전혀 진행되지 못하였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이러한 사실은 《증보문헌비고》245권 [보] 예문고4 본조 《수교집록》조에 실려 있는 《숙종이 력대 왕조에서 내려보낸 지 시문을 모아서 〈수교집록〉으로 편찬하게 하였다.》는 자료를 통해서도 명백히 알수 있다.

《수교집록》에 대한 편찬사업은 숙종(1674 -1720)시기 구체적으로는 1680년대에 와서야 시작되였다.

1682년 11월에 승정원의 승지 서문중은 법관계서적들의 부족점과 법집행에서의 약점을 피력하면서 《대전속록》과 수교의 출판 및 배포의 긴박함을 국왕에게보고하였다.

《지방의 고을들에서는 법률관계서적들이 아직 다 갖추어지지 못하였습니다. 더우기 수교에 대해서는 더욱 캄캄하다보니 고을 원들은 법규례대로 하지 못하고 대부분 억 측으로 처결하고있습니다. 〈대전속록〉과 력 대 임금들의 수교들을 수집하여 나무판에 새긴 다음 출판하여 널리 배포하려고 합니 다.》[《숙종실록》권13 임술년(1682년) 11월 기 미조]

서문중의 제의에 따라 국왕은 비변사에 서 이 제의를 토의하고 비변사 당상관이며 형조판서인 리익이 수교정리사업을 관할하 도록 지시하였다.(우와 같은 조)

력대 국왕의 수교들을 법조문성격에 맞게 수집정리하는 사업은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니였으므로 한두사람이 짧은 기일에 순조롭게 할수 없었다.

이로부터 1682년으로부터 1년이 지난 1683년에 수교편집을 위한 인원수를 증강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수교를 모아서 편집하는 일을 이전에 형조판서 리익을 시켜 맡아보게 하였는데 형조판청의 사무가 바빠서 겸하여 보기가 곤난한 형편이니 윤지완이 함께 맡아보도 록 하기 바랍니다.》[《숙종실록》 권14 계해 년(1683년) 5월 병오조]

당시 인원증가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명의 인원으로써는 수교정리사업을 빠른 시일안에 원만하게 진행할수가 없었다.

수교서적편집의 절박감을 인식한 조선 봉건왕조는 수교정리를 위한 인원수를 더 증원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1687년 8월에 국왕은 비변사의 제주 1명과 당하관 2~3명에게 력대 임금들의 수교를 수집하여 국왕의 승인을 받아 간행 하도록 지시하였다. *

*《숙종실록》 권17 정묘년(1687년) 8월 무오조

《수교집록》서문에 의하면 이 이후에도 수교편찬사업에 많은 인원을 동원시킨것으 로 되여있다.

《수교집록》서문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 되여있다.

《국왕은 경연을 통하여 저(리여를 말함 -역주)에게 말하였고 또 리조판서 리익, 례조판서 윤지완에게 또 병조판서 조사석, 형조판서 서문중, 부제학 최석정에게 명령 하여…중앙과 지방관청들에서 받은 여러 임금들의 명령이나 지시들중에서 번잡한것 은 추리고 요긴한것만 발취하여 속록의 큰 조목과 작은 조목과 같이 부류별로 편성하 도록 하였다. … …신하 서문중은 처음부 터 마지막까지 관할하였고 령의정들인 김 수항, 김수흥, 남구만이 련속 이 책의 편 찬을 통솔하였다.》

이 사료를 통하여 중앙과 지방관청들에서 받은 력대 국왕들의 수교를 대대적으로 수집정리해야 하는 방대한 사업은 많은 인 원과 오랜 기일을 요구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력대 국왕들의 수교를 수집하는 사업은 국왕의 《지시》들중에서 법집행과 관련된 지시들을 하나하나 추려서 편찬해야 하는 사업인것만큼 수교편찬에는 국왕도 참여하 였다.*

*《기록된 내용중에서 전날의 지시와 후날의 지시가 맞지 않는것이 있으면 서 뿔리 삭제할수 없었으므로 임금에게 보고올려 지시를 받았으며 같은것이 두개 있을 경우에는 후의 지시를 따랐습니다.》(《수교집록》서)

이 기사는 수교편찬사업이 국왕과의 직접적인 련계밑에 진행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국왕의 직접적인 관여밑에 진행된 수 교편찬사업은 1698년에 와서 일단락을 지었다.*

*《책은 이미 이루어져 6권으로 편성하고 책의 이름은 〈수교집록〉이라고 달아놓았는데 해당 관청들에 반포하도록 명령을 내리였습니다. …무인년 3월 상순》(《수교집록》서)

이 기사에서 무인년은 숙종 24년 즉 1698년이다.

이 책이 1698년에 편찬되였다는 기록은 《영조실록》권32 임자년(1732년) 10월 무 인조에도 실려있다.

우의 기사들을 통하여 수교편찬이 1698 년에 일단락을 지었으며 책이름은 《수교집 록》이라고 하였다는것, 이 책이 배포할수 있을 정도의 량으로 편찬되였다는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수교집록》의 편찬은 1682년부터 시작하여 1698년까지 16년간 진행되였다.

이 편찬기간에 《수교집록》편찬에는 비교적 많은 관리들이 동원되였다.

《수교집록》 서문을 통하여 수교편찬에 동원된 인물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령의정: 김수항(1629-1689), 김수홍 (1626-1690), 남구만(1629-1711)

리조판서: 리익(1629-1690)

례조판서: 윤지완(1635-1718)

병조판서: 조사석(?-?)

형조판서: 서문중(1634-1709)

부제학: 최석정(1646-1715)

우참찬: 리여(1645-1718)

여기에서 형조판서 서문중은 《수교집 록》편찬의 전과정에 참가하였고 령의정들 인 김수항, 김수홍, 남구만 등은 차례를 이어가면서 이 책의 편찬에 동원되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 책의 서문은 1698년 3월에 의정부 우참찬 리여가 작성하였다.

이와 같이 법관계서적 《수교집록》은 조 선봉건왕조의 유지 및 강화를 위하여 비교 적 오랜 기일에 걸쳐 국왕과 나라의 높은 관료들의 직접적인 참가밑에 일단락 완성 되였다.

이 시기 완성된 《수교집록》은 당시의 법집행에 적극 활용되는것과 함께 이후의 법관계서적의 편찬에 적극 리용되였다.

《수교집록》에 올라있는 법조항들이 《대 전통편》,《대전회통》,《결송류취보》와 같은 법관계서적들에 적극 인입됨으로써 조선봉 건왕조후기의 법관계서적의 편찬을 적극 추진시킬수 있었다.

따라서 조선봉건왕조의 법관계서적의 편 찬과 면모를 파악하려면 《수교집록》의 편 찬과정에 대하여 잘 아는것이 중요하다.

물론 《수교집록》은 철두철미 지배계급의 지배권을 옹호하고 인민대중의 리익을 침해하는데 이바지한것만큼 그 내용을 비판적으로 대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교집록》은 조선봉건왕조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연구와 법관계서적편찬사에 대한 연구에서 일정한 의의를 가지는 법관계서적인것만큼다른 민족고전들과 함께 이 서적에 대해서도 연구를 더욱 심화시켜야 할것이다.